

## 가전제품 제조업자의 제조물책임과 생산물배상책임보험

글·홍 령 특종보험지원팀장  
현대해상 화재특종부

현재 국내 일반 가정기준 한 가옥당 평균 20점의 가전제품을 있다고 가정시, 총 14백만 세대(2000년 통계청 기준) 전부가 보유하고 있는 가전제품은 2억8천개라는 통계적 수치가 나옵니다. 이러한 가전제품이 모두 안전하게 사용되고, 이상 없는 제품으로 가전제품의 생명을 다하여 안전하게 폐기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특히, 가전제품 사용자는 기술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유아나 노인도 포함될 수 있으므로, 여타 다른 제조물과는 달리 인명과 관련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제조물에 속하기 때문이다.

2002년 7월 1일 “제조물책임법” 시행을 6개월 앞둔 현재 국내 제조업체에서는 PL 위험에 대한 대책수립에 부심하고 있으며 당연히,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하는 이론상 최선의 대비책은 “결함이 없는 안전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것이다.

기업의 제조물책임대책은 PLP(Product Liability Prevention : 제조물예방대책)과 PLD(Product Liability Defence : 제조물책임방어대책)으로 나누어 지는데, 대기업의 경우 내부적으로 PL 위험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인적 물

적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는 기업의 환경상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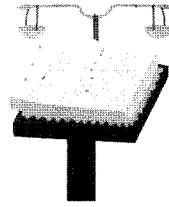
따라서,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제조물책임방어대책(PLP)의 방안으로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가입을 검토할 수 있다. 보험의 장점으로는 첫째 비교적 고정적인 보험료비용으로 위험을 전가하여 경영의 안정성확보가 가능하며, 둘째 PL 관련 Claim 처리, 변호사선임 등에 필요한 별도의 위험관리조직이 필요없어 사업비 절감효과가 있으며, 셋째, 보험사의 전문적 경험 및 Know-How 활용, PLD 대책 조언 서비스, Claim 처리 Feedback, 지속적인 PL Consulting 서비스 활용의 장점 등이 있다.

이하의 글에서는 첫째 내년 7월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이 미치는 영향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제조물책임법” 시행이 미치는 영향

#### (1) 입법경과 사항

지난 1999년 12월 『결함제조물책임법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00년 1월 12일 공포,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조물책임법(법률 제



6,109호)은 제조물의 정의, 손해배상의 책임주체, 책임원칙, 제조업자의 면책사유, 연대책임, 책임기간의 제한 등 총 8조와 부칙 2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반법인 민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적용된다.

(2) 책임법리의 변화

제조자와 소비자간 적용되는 책임법리는 피해자의 인과관계 입증부담 경감차원에서 “제조업자의 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을 “제조물의 결함”이라는 객관적인 요건으로 변경되게 된다. 즉, 제조자의 과실여부 상관없이 무과실책임(결함책임법리)이 적용되게 된다.

적용되는 책임법리의 변경내용을 요약하면 표1과 같다.

(3) “제조물책임법”이 미치는 영향

제조물책임법이 국내 제조업체에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 영향은 다음과 같다.

긍정적 영향

-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 소비자보호에 충실
- 기업의 경쟁력 강화

부정적 영향

- 제조원가에 부담
- 인력자원의 낭비
- 신제품개발의 지연
- 기업이미지 실추

구체적으로, 제조물책임법 시행으로 제조자와 소비자 당사자간 PL Claim분쟁관련 예상효과는 표2와 같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1995년 7월 “제조물책임법” 시행후 PL고발,상담건수가 시행 이전보다 2배 증가한 사례를 비추어 국내에서도 2002년 7월 이후 소비자로부터의 PL Claim 청구사례가 현재

표 1 : 적용 책임법리의 변화

구 분	도입전 민법 750조 (불법행위책임) 적용	제조물책임법 도입후
책임요건	-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 (불법행위/보증책임)	- 제조물의 결함 (무과실/엄격책임)
입증범위	- 손해의 발생 - 손해발생과 과실과의 인과관계	- 손해의 발생 - 손해발생과 제조물의 결함과 인과관계
제조자의 환경변화	- 소비자측 과실 입증책임 (제조자측 과실없다는 해명) - 피해자에 대한 개별대응처리 - 제조자측 자발적 Recall처리	- 제조자측 무결함 입증책임 (최근 판례상 증가추세) - 소비자측 단체PL소송 - 강제 Recall 시행

표 2 : PL법이 제조자 소비자간 미치는 영향

구 분	예상효과
소비자	- 소비자의 법적규제 용이 - 소비자의 PL Claim청구상 승소율 증가
제조자	- 제조물책임 예방대책비용 증가 - 신제품개발의 위험 증가 - Claim 사고시 기업이미지 실추 등 경영위험 증가 - 소비자측 PL Claim증가

보다는 상당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 가전제품의 PL위험의 특성과 제조물책임 대책(PLP)

### (1) 가전제품의 PL위험의 특성

가전제품은 전기를 사용하는 상품의 성질상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상해 위험이 큰 제조물중 하나이다. 전기난로와 같은 가장 단순한 구조의 전기제품도 사용과 보수 점검 방법에 따라 누전이나 감전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으며, 최근에는 급속한 기술발달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신종 가전제품이 탄생하고 있어 그만큼 소비자의 오용 및 PL 사고의 가능성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사고 형태로는

첫째, 충전부 노출에 의한 사용자의 감전사고, 가동부 접촉 압력폭발 및 제품에서 발생하는 열에 의한 사용자의 상해사고 등 사람의 신체상해위험과 둘째, 단락, 과부하, 과열에 의한 화재사고 등 재물에 대한 재산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기제품에 대해서는 설계상, 제조상의 결함이 없도록 최대한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은 물론이지만 상품에 대한 취급설명서에 다양한 수준의 소비자가 올바른 사용법을 용이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재하는 동시에 오용을 막기 위한 적절한 경고 라벨을 첨부하는 등의 대책이 요구된다.

전자공학적 전문적인 내용은 전기 제품내에도 많이 내장되어 있지만, 일반사용자는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가전제품의 결함의 구체적인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 결함별 주요내용

설계상의 결함	제품의 설계단계에서 안전성이 충분히 배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조된 제품이 안전성을 잃은 경우
제조상의 결함	제품이 설계, 방법서대로 제작되지 않아서, 안전성을 잃은 경우
경고상의 결함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주의나 경고 등을 소비자에게 부여하지 않은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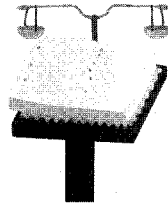


표 4 : 주요품목별 피해구제 사례

구 분	1997년	1998년	1999년	구성비
문화용품	2,611	3,557	2,727	37.8%
생활용품	1,263	1,442	935	13.0%
식료품	305	463	636	8.8%
차량 및 승용물	1,213	1,641	1,362	18.9%
피복제품	458	637	646	9.0%
토지, 건물, 설비	279	709	480	6.7%
보건위생용품	181	230	199	2.8%
공업용기계	15	9	-	0.0%
에너지	6	20	27	0.4%
농업어업용품	119	176	187	2.6%
기타상품	1	3	10	0.1%
계	6,451	8,887	7,209	100.0%

(2) 국내외 가전제품관련 PL 사고사례

국내 PL 관련 소송통계는 메스컴에 공표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또한 판결이라고 해서 모두 공표되는 것도 아니며, 게다가, PL소송에 관련한 사법통계 등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로 정확한 국내 가전제품 PL통계는 없으며, 이와 관련한 자료는 각종 국내외 PL자료 중의 통계와 신문검색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자료이다.

국내 가전제품관련 PL Claim 통계는 우선 한국 소비자보호원 1999년 발간 소비자피해구제사례집(표 4참조)을 보면 구분된 가전제품 항목은 없으나, 문화용품과 생활용품 항목을 살펴보면 전체 구성비 중 가전제품이 약 30% 내외임을 알 수 있다

일본 통상산업성(현 경제산업성) 1999년도 상품분류별 사고통지 건수(표 5 참조)를 기준으로 살펴 보아도 주요 품목별 사고통지건수 대비 약 28%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다

표 5 : 일본 통상산업성 상품분류별 사고통지 건수

구 분	건수	구성비
연소기구	359	37.2%
가정용전기제품	268	27.8%
자동차/자동차부품	168	17.4%
신변용품	51	5.3%
레저용품	28	2.9%
가주/주택용품	26	2.7%
보건위생용품	20	2.1%
부엌/식탁용품	19	2.0%
유아용품	10	1.0%
섬유용품	10	1.0%
기타	5	0.5%
계	964	100.0%

구체적인 주요 국내외 PL 사고 Case사례는 다음의 표 6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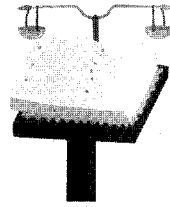
표 6 : 주요 국내외 PL 사고

■ 해외 PL 사고 사례

사건명	사건개요
일회용 카메라 감전사건	플래시가 내장되어 있는 일회용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들은 감전 사고 (1996. 7. 1 영국)
전기밥솥 폭발발사건	제품 내부의 전선 연결부가 인화성 절연물질을 사용 보온 작동중 불꽃을 일으키며 폭발한 사건 (1998. 3. 1 미국)
전기난로 온풍기 화재사건	미 Rheem사에서 제조한 전기난로(electric furnaces)와 전기온풍기(electric air handler)가 고온으로 인해 일부 성분들이 누출 용해된 금속입자들은 가연성 물질에 가깝고, 화재의 원인이 될 위험성 발견 (미국1999. 1. 1)
의료건조기 화재사건	중고의류건조기를 구입한 지 2주일 후 모포를 건조시키기 위해 사용중이던 건조기 과열로 화재가 발생 가옥의 소실의 손해를 입은 원고가 엄격책임에 의거 손해배상을 청구(미국)

■ 일본 PL 사고 사례

전동톱 사건	건축현장에서 전동톱을 사용해 목재를 절단하던 중 반동으로 톱날이 거꾸로 날아 오는 킥백현상이 발생, 그 전동톱을 이용하던 원고의 오른손에 맞아 손가락 2개에 상당히 심한 열상을 입은 사건 (일본 1992)
전기카페트 발화사건	구입후 5년간 계속 사용해 왔던 전기카페트의 전원플러그를 콘센트에 꽂아 둔 채 스위치를 끈 상태로 두고 외출 3시간 후에 돌아와 보니 방 안에서 탄 냄새가 나서 조사한 사건 (1996. 2.)
TV발화사건	1944년 TV발화로 사무소가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 TV제조업자가 설계, 제조상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TV발화로 인한 화재사건 (1994)
공기청정기 발화사건	공기청정기 설계상의 결함으로 공기청정기 발화로 부속의 에어컨 및 가구가 소실 되는 사고
급탕기 발화사건	제조상이 결함으로 석유급탕기 발화로 건물 및 집기비품 등이 소실되는 사고
라디오카세트 발화사건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해 라디오카세트 발화로 건물 가재도구 등이 소실되는 사고
조리기구 파열사건	지시경고상 결함으로 취급설명서에 직화업금이라는 표현이 없어 조리중 파열되어 바닥에 떨어지는 사고
재단기 절단사건	제조상의 결함으로 전기계통의 접촉불량으로 오작동되어 작업자의 손가락이 절단 되는 사고



냉장고 미작동 사건	과일보존용 냉장고의 온도설정기가 잘못 작동되어 과일이 부패하는 사고
룸에어컨 물방울 사건	룸에어컨 내부에서 생성된 물방울이 컴퓨터 내부에 떨어짐으로 인해 누전발생 정보데이터 소실되는 사고(1998. 3)
전기포트 화상사건	생후 10개월된 여아가 전기포트를 건드리자 뚜껑이 열리며 물이 쏟아져 화상을 입은 사고(1998. 12)
카스테레오 화재사건	승용차에서 카스테레오 스피커 결함으로 화재발생 차안의 사람이 사망하는 사고 (2000. 3)
전화어댑터 화재사건	무선전화기 충전기 어댑터가 발화되어 아파트가 전소되는 사고(1995)
세라믹 히터 발화사건	세라믹 히터의 발화로 가옥이 전소되는 사고(1994. 8)
냉동고 발화사건	음식점의 업무용 냉동고가 발화, 집기비품 및 업소용 도구 등이 소실되는 사고 (1999. 8)
VTR 발화사고	VTR발화로 사무실이 전소되는 사고(1995. 11)

■ 국내 PL 사고 사례

계기용 변류기 폭발사건	광석채굴회사인 원고가 피고회사가 제조한 계기용 변압변류기(Metering outfit)를 구입해 설치한 지 2년 후 이상전압으로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 그후 2차 폭발로 인해 직원이 중화상을 입고 사망사고 발생(한국 1992. 11)
노래방기기 (스토어)사건	제조업자가 제조한 스토어에 근본적으로 중대한 결함이 있어서 설치업자가 노래방 기기의 판매·설치사업을 중단하게 되어 손실을 입은 사건(한국 1999. 2)
칼라TV 화재사건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있던 중 폭발음과 함께 불이 솟아오르면서 커튼에 옮겨 불어 건물의 2층 내부와 그 안의 가재도구가 전소된 사건(한국 1992. 8)
전기요 화재사건	전기요의 전원플러그 인접부에서 발생한 합선에 의하여 발화·연소하면서 생긴 유독가스에 의하여 전기요 위에서 취침 중이던 사람이 질식사하여 사망한 사건 (한국 1993. 3)
열풍기 피해사건	국내수입상의 대리점을 통하여 미국산 열풍기를 구입하고 이를 계사에 설치하여 병아리를 사육해 오던 중 열풍기의 제품불량으로 인하여 계사 내의 온도가 고온으로 상승하여 병아리가 폐사하는 사건 (한국 1993년)
조명기구 화재사건	원형 형광등 2개로 구성된 조명기구(스타트전구는 피청구인이 제작)를 구입·사용 하던 중 조명기구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장롱과 침대가 소실되는 사건(한국 1993. 3)
녹즙기 절단 사건	작동중인 녹즙기에 유아들이 손가락을 넣었다가 절단당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사건 (한국 1994. 2)

녹즙기 쇧가루사건	녹즙기에서 쇧가루가 검출되어 커다란 사회문제가 된 사건이(한국 1994. 8)
냉장고 병꽃이사건	냉장고 문 안쪽 병꽃이 선반에 넣는 순간 선반의 오른쪽 부착위치가 떨어지면서 선반과 냉장고 문사이가 벌어져, 토너워터병이 떨어지면서 깨진 유리조각이 원고의 눈에 튀어 부상을 입은 사건
팬히터 화재사건	팬히터를 켜두고 소파에 앉아 TV를 시청하고 있던 중 팬히터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아파트 내부가 전소되는 사건
자외선 살균등 사건	병원 구내식당 종업원 사이에서 집단괴질이 발생하였는 바, 이는 역학조사결과 식당살균등에서 방출된 자외선이 주된 원인으로 밝혀진 사건

(3) 제조업체의 제조물책임대책 (Product Liability Prevention)

기술적으로 고도화된 전기제품의 최근 경향으로 소비자가 보수 내지 관리할 수 없는 부분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 사용하고 있는 기간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상품이 인도된 시점에 이미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었다고 사실상의 추정을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경우 제조업자로서 유의해야 할 점은 동종의 제품에 결함이 없다고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난 제품 그 자체에 대해 결함이 없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해당 제품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증거물로 고려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가전제품에 의한 사고는 소비자의 오용에 의해서도 발생합니다. 가전제품은 사용 빈도가 높은 만큼 오용의 경우도 많은 바, 비록 잘못된 사용법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예견 가능한 것이라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설계, 제조에 만전을 기하거나, 경고·지시 등이 필요하며, 나아가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를 분석·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제조자 입장에서 최선의 제조물책임대책(PLP)은 현재 제조, 유통되는 제품에 대한 클레임을 활용하여 오용이나 사고의 예측, 설계나 경고·지시의 재확인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 PL클레임 처리창구를 설치한다든지 담당조직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다.

현재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서 강제인증대상으로 지정되어 있는 전기제품 170여개 품목을 제조하는 3,500여개 국내업체중 약 3,000여개 업체가 중소기업으로 서두에서 언급하였듯이, PL클레임 전담부서를 신설,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나 PL Claim발생 처리비용 등을 감안한다면,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제조물책임방어대책(PLP)으로 보험회사의 "생산물배상책임(PL)보험" 활용도 차선책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